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	2021. . .	
연월일	(제 회)	

고령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
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고령군수 (주민복지과장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무통계담당 심사필

고령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21. . .

제 출 자 : 고 령 군 수

1. 개정이유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개정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최저보험료가 변경(인상)됨에 따라 지원 대상 기준을 개정하여 저소득주민의 보험료 부담 완화 및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료 지원대상 기준을 변경함(안 제2조)

-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0,000원 미만에서 “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”

3. 개정안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

나. 예산조치 : 여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 : 2021.09.13. ~ 2021.10.03. 기간 중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3) 성별 영향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4) 비용추계 분석 : 해당없음

5) 조례규칙심의회 : 원안 통과(2021.10.15.)

고령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령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0,000원 미만”을 “건강보험료
부과금액이 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
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“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2022. 1. 1.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지원대상)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“공단”이라 한다)고령군 지역가입자로서 <u>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0,000원 미만</u>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(이하 “대상자”라 한다)로 한다.</p> <p>1. ~ 6. (생 략)</p>	<p>제2조(지원대상) ----- ----- <u>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」에 다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고령군 주민복지과	
연 락 처	(054) 950 - 6292